제210회 임시회 광 진 구 의 회

서울특별시 광진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안) 검토보고서



2017. 9. 5.

복지건설위원회 전 문 위 원

서울특별시 광진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안) 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 1374

2017. 9 . 5. 복지건설위원회

1. 제 안 자 : 정관훈 의원

2. 제정이유

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홀로 사는 노인의 경제적, 신체적, 정서적,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과 고독사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,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하고, 매년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안 제3조, 안 제4조)
- 다.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실시 및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5조)
- 라. 고독사 예방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민·관 협력체계 구축(안 제6조)
- 마.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지원사항(안 제7조, 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가.관계법령 : 「노인복지법」

나.예산조치 : 광진구청과 추후 협의

다.입법예고 : 2017.6.30. ~ 7.4.(결과 : 의견 없음)

5. 검토의견 (전문위원 김왕기)

- 본 제정조례(안)은 2017년 6월 30일 정관훈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9월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임.
- 본 조례(안)은 노인인구의 증가 추세와 더불어 특히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행·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,

○ 주요 제정내용은

- 안 제2조에서 "홀로 사는 노인"이란 가족 등의 지원 없이 홀로 사는 노인으로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,
- 안 제3조에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·추진 등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고독사 위험자 등록·관리 체계 구축 및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·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예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고독사 위험자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것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6조에서는 고독사 예방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민·관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하였고.
-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하고 심리상담·안전도우미 파견·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적극 발굴 연계 등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음.

○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

- 법적인 근거 : 「노인복지법」제4조 및 제27조의 2 ⇒참고자료
- 본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구 사무의 범위에서 제정되는 자치조례로 볼 수 있으며.

- 「노인복지법」제4조 및 제2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증진 시책 및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법에 위반 및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○ 종합 검토의견으로

- 우리 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 지원사업은 대부분 국·시비 보조사업이며,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노인인구 및 홀로 사는 노인의 증가에 대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.
- 이런 관점에서 향후 다양한 구의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.

※ 참고자료: 별지

- 1. 관계법령
- 2. 2017년 광진구 독거노인 및 고독사 예방사업 현황

참 고 자 료

1. **관계법령**: 「노인복지법」제4조 및 제27조의2

- **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**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 -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27조의2(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.

2. 2017년 광진구 독거노인 및 고독사 예방 사업 현황

○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현황

(2016.12월 현재)

	광진구인구	65세이상	독거어르신	2017년 돌봄서비스 대상자				
				합 계	돌봄기본	돌봄종합	서울재가관리	0쿠르트일일방문
	359,117	40,926 (11.4%)	9,458	2,210	750	110	50	1,300

○ 독거노인 지원 사업 현황

순 번	사업명	대상자수 (명)	예산소요액	세부내역
계			1,405,366천원	
1	노인돌봄기본	750	359,311천원	국:시:구=50:25:25
2	노노케어(말벗서비스)	300	297,000천원	국:시:구=30:35:35
3	경로식당	320	313,875천원	시:구=85:15
4	밑반찬배달	430	176, 128천원	人日 100%
5	장제급여	90	67,500천원	국:시:구=60:28:12
6	0;쿠르트안부확인	1300	191,552천원	구비 100%